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우수작 강의안 요약서

제 목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
수 상 자	백정연, 성명진 (소소한 소통) 손다진 (성공회대학교)
강의대상	성인 (공무원, 직장인 등)
강의목표	다양성을 가진 사회임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며, 장애인을 만났을 때 거부감이나 어려움 보다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단계	시간 (총60분)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사- 학습자)	강의자료 (매체/기자재)
도입	10	장애에 대한 이해 -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장애 용어의 의미, 우리나라 장애 유형	강사 강의	빔프로젝트 인터넷 스피커
전개	15	장애인과 인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률과 내용	강사 강의	빔프로젝트
심화	25	장애인의 특성 / 편의지원 - 15개 장애유형의 특성, 어려움에 따른 적절한 편의지원(기구, 환경 등)	강사 강의	빔프로젝트
정리	5	마무리 - 다양한 존중을 위한 사회적 관점 변화의 필요	강사 강의	빔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우수작 강의 상세원고

※ 본 강의 원고는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주최:보건복지부,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상한 강의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수정 및 감수하였습니다.

☐ 제 목 : 장애인식개선교육 ‘Society for all’

☐ 강의대상 : 공무원, 직장인 등 성인

☐ 강의목표 : 다양성을 가진 사회임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며, 장애인을 만났을 때 거부감이나 어려움 보다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

백정연, 성명진, 손다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맡은 000입니다.

장애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청중 대답 유도)

(대답 일부 이용하며) 네 그런 생각이 나시죠.

평소 장애인을 잘 만나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에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불쌍하다” “대하기 어렵다” 등등의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요. 나의 일이 아니고,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없다면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듣고 머리와 마음에 담아 두신다면,
길을 가다 우연히 장애인을 만났을 때
우리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ndex

- I. 장애 이해하기
- II. 장애의 특성
- III. 장애인과 인권
- IV. 장애인과 편의 지원
- V. 장애유형별 에티켓
- VI. 마치며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 이해하기
두 번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장애인유형별 특성이 어떠한지
네 번째 장애인에게 어떠한 편의지원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 의학적 질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컸다면 이제는 장애를 사회라는 환경 안에서 바라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불구, 바보, 병신, 장애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사용할 때에는 disabled people보다는 people with disability 또는 people with impairment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표현)

또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differently abled people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대답 유도)

네, 장애인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장애를 대하는 사회적 이중성, 혼란

■ 장애를 구분하는 목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왜 이렇듯 꼭 구분해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수준의 목적.

이는 장애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정적,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야 하는 사람으로 분리하는 거죠.

당연히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으로 구청에 찾아온 장애인에게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연민과 동정이 마음에 깔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수준의 목적으로 나와 다르다, 불편하고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낙인입니다.

사회에서 함께하지 않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게 되죠.

장애인의 정의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

장애인복지법
(1989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1981년 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9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기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용어의 함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법의 명칭이 바뀐 것처럼 장애인 용어도 조금씩 변했는데요.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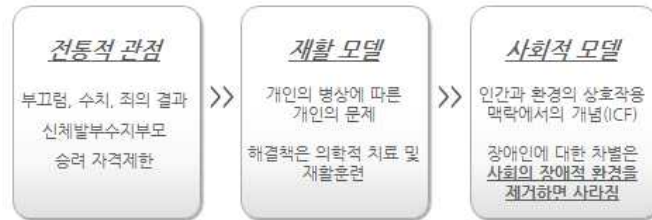
놈자 라는 한자의 의미가 좋지 않을뿐더러,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이 든 장애인에게도 장애를 가진 친구라 부르니 예절에
맞지도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칭하기 어려운 단어라
어법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애인은 권리를 가진 동등한 사람으로서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 개념의 변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을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장애를 설명"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그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부모의 죄, 부끄럼, 수치로
보는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재활모델에서는 개인의 병상에 의한 개인의 문제, 의학적 치료와
재활훈련으로 치료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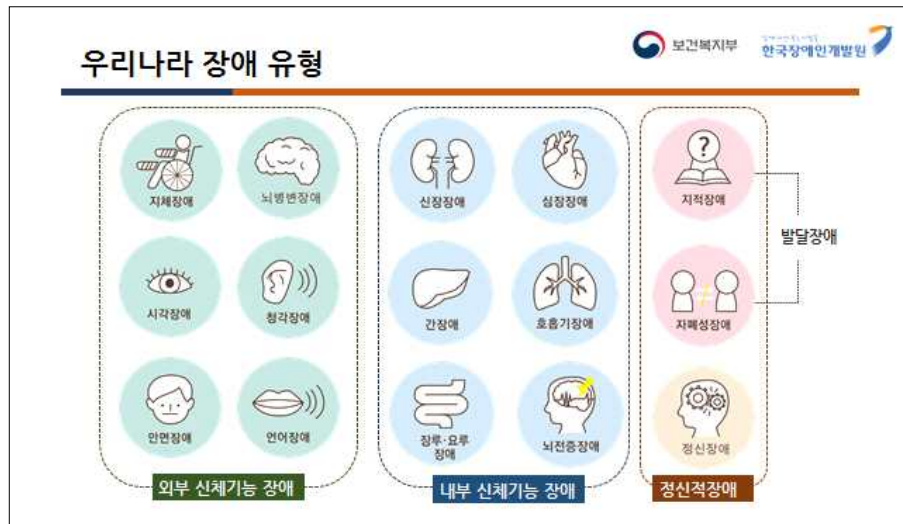
지금의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이 있는 건물을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사로나 턱이 없는 건물로 만든다면 장애가 사라지는
거죠.

II. 장애의 특성



두 번째, 유형별 장애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15개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각 장애유형별 특징과 어떠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앞에서 말씀 드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5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는데요.

크게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신체기능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각각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성 중에 장애로 인한 특성은 일부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다 다르듯이 장애인도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지체장애



원인

- 선천적, 후천적 원인으로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
- * 소아마비, 근육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등이 지체장애인에 속한다



어려움/특성

- 근력이 약해지거나 위축, 경직 등이 있음
-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며 후천적 원인이 95%를 차지함
- 대중교통, 공공시설, 생활공간의 접근 제한, 학교 등 주요 시설 접근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체장애인은 소아마비, 근육장애, 척수손상, 절단 등으로 신체의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은 장애인을 말합니다.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등 물리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원 인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
- * 언어상의 기능장애,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뇌병변장애
어려움/특성

- 편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손발 뒤틀림 등의 외형적 특성이 발생하기도 함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생깁니다.

뇌병변장애는 편마비나 감각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에 따라 언어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손발 뒤틀림 등의 외형적 특성으로
따가운 시선을 겪기도 합니다.

시각장애



원 인

- 백내장, 녹내장, 당뇨, 망막염, 눈부상, 노화로 인한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



어려움/특성

- 흰자팡이, 안내견, 보조인 등의 지원을 통해 이동함
- 점자나 음성의 형태로 정보를 습득 (ex) 점자시계, 목소리시계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각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당뇨, 노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시력을 잃는 저시력, 그리고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이 있습니다.
이동에 지원이 필요하고,

눈으로 보는 정보 보다는 점자나 음성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촉각이나 청각, 후각 등이 예민하기도 하여 소리 나는 시계, 만지는 시계 등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청각장애



- 중이염, 부상 등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의 이상
- * 65세 노인의 33%에서 노인성 난청



- 보청기,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 가능함
- 농문화(deaf culture): 수어를 사용하며, 농인의 이념을 공유함

청각장애는 중이염, 부상 등으로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에
이상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노인의 33%에서 노인성 난청을 가집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 이식을 통해 청력을 일정 정도
회복하기도 하고, 수어나 필담을 통해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시각적 정보가 중요합니다.

언어장애



- 언어중추 신경조직과 신경기관의 손상
- 구음장애, 음성장애와 같은 소리전달 과정의 문제 발생



- 음의 고저가 적당하지 않음
- 의사소통의 부자유스러움이 있을 수 있음
- SNS나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언어장애는 언어중추 신경조직과 신경기관의 손상으로 소리전달 과정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음의 고저가 적당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의 부자유스러움이 있으며,
문자나 SNS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장애



원 인

- 선천적 기형, 교통사고, 질환, 화상 등으로 인한 안면부의 변형



어려움/특성

- 눈에 띄는 외모로 인해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경험하는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면장애는 선천적 기형, 교통사고, 질환, 화상 등으로
안면부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인해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경험하는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장장애



원 인

- 만성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경화증 등
- 신장기능이 90% 이상 소실
- * 당뇨병성 신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신장장애
어려움/특성

- 신장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로 병원 진료가 잦음
- 잦은 병원 진료로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장장애는 신장기능이 90% 이상 소실된 경우로
신장이식을 하거나 투석을 받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인 경우 신장이식수술을 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병원 진료가 잦고,
자주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심장장애



원 인

- 기질적 심질환으로 인한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의 손상, 혈관의 손상 등



심장장애
어려움/특성

-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중 호흡곤란 발생하기도 함
- 그로 인해 대인관계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 발생하기도 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심장장애는 기질적 심질환으로 인한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이나 혈관에 손상을 가진 경우입니다.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 사회활동의 어려움,
그로 인한 대인관계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장애



원 인

- 만성간질환,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
- * 간이식수술을 받거나, 간기능 평가등급이 C인 사람



어려움/특성

- 피로,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체중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음
- 말기에는 간세포 기능 장애가 생기고,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간장애는 만성간질환, 난치성 복수 등으로 생기며,
피로나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체중감소 등의 신체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말기에는 간세포 기능 장애가 생기고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장애



원인

- 폐질환, 기도폐쇄 등 폐나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관의 기능 장애



호흡기장애
어려움/특성

- 만성적인 기침, 객혈,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증상 뿐 아니라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함



호흡기장애는 폐질환, 기도폐쇄 등 폐나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관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만성적인 기침, 객혈, 호흡곤란, 가슴 통증 뿐 아니라
천식, 결핵, 폐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루·요루장애



원인

-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생김
- 장루 보유자들의 큰 원인은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의 악성종양
- 요루의 원인은 방광암, 요도의 종양, 결석 등



장루·요루
장애
어려움/특성

- 암의 치료를 위해 큰 수술을 받고 재발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음
- 일정한 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있음
- 장루주머니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불편함을 겪기도 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장루, 요루 장애는 대부분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생깁니다.

장루 보유자의 대부분의 원인은 직장암, 대장암과 같은 악성종양이며 요루의 원인은 방광암, 요도의 종양, 결석 등입니다.

암의 치료를 위해 큰 수술을 받고 재발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루주머니로 인해 사회활동에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뇌전증장애



원 인

-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원인이 매우 다양함



뇌전증장애
어려움/특성

-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음
- 발작으로 인해 운전을 못하는 등 직업생활의 제한을 갖기도 함



뇌전증장애는 간질장애가 바뀐 명칭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뇌전증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고,
발작으로 운전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한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



원인

- 생물학적 요인 : 감염과 중독, 분만시 원인,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염색체 이상 등
- 심리사회적 요인 : 아동 양육형태, 거주지 문화 정도,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등



지적장애
어려움/특성

- 말과 언어의 지체(조음장애, 구어발달 지연, 제한된 어휘 등)가 있음
- 주의집중력이나 단기기억력이 낮음
- 적응능력은 부족하나 우호적/적대적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 있음
- 밝은 성격으로 정서, 감정, 오락적 유희에 민감한 사람이 많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적장애는 분만시 원인, 염색체 이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아동의 양육형태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언어나 인지 발달에 제한이 있어 의사소통, 주의집중력이나 단기기억력이 낮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정서, 감정, 오락적 유희에 민감하고, 이러한 성격으로 주변을 밝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폐성장애



- 임신/분만시의 합병증, 경련성 동반의 질환, 풍진 등 감염성 질환, 뇌의 이상 등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 불가



- 강박적 행동, 상동행동 등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음
- 일상적인 일과의 규칙이나 의례적 행동에 융통성이 부족함
- 정서적인 상호반응, 정신적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 (마음맹)
- 뛰어난 암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 (서번트 증후군)



자폐성장애는 임신/분만시의 합병증, 뇌의 이상 등을 원인이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강박적 행동이나 상동행동 등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으며, 일상적인 일과의 규칙이나 의례적 행동에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마음맹이나, 뛰어난 암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장애



원인

- 조울증(bipolar disorder), 우울증(depression), 조현병(schizophrenia),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

어려움/특성

-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자기 방어적임
- 도덕모델(사회적 낙인과 배척)
- 의료모델(정신의료 전문가에 의해 통제되는 삶)
- 사회모델(거주, 취업, 의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말합니다.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에 있어 자기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으로 시선의 불편함을 겪으며, 정신의료 전문가에 의해 삶을 통제 받기도 합니다.

Ⅲ. 장애인과 인권



다음은 장애인과 인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어떠한 법률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

- 직접차별 : 배제, 분리, 거부
-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부재 또는 거부
-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의 배제, 분리, 거부를 조장하는 광고
- 장애인의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의 방해



+ 권리보장 과제

- 장애인 차별금지 실질화(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강화, 장애차별 요소가 있는 모든 법률의 정비)
-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복지, 고용, 교육 등의 정책에 사용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첫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분리를 하거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는 등이 차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한명 한명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의학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에 중증, 경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생존, 생활의 권리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지) 가구 중 하위70% 수준 이하, 1인당 월22-28만원
-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아동, 1인당 월 10-2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장애인거주시설(거주시설, 그룹홈)
- 장애인복지관



+ 권리보장 과제

-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장애인 가입률 제고(취업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 대규모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주택지원 강화



생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소득이 낮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으로 생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취업률을 올리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전공과는 무상교육
- 특수학교 설치(전국 173교; 발달장애 학교, 맹학교, 농학교 등)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전국 10,325개)
-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 199개)
- 장애 대학(원)생 학습 도우미지원
- 평생교육 지원(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



+ 권리보장 과제

- 통합교육 기반 강화(교사의 장애이해 및 인권 교육 강화, 통합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장애이해 및 인권 교육 강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고등학교 까지 모두 의무교육인데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육 도입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이 아직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 앞에 특수학교는 안된다.. 그런 분이 없어지죠)

노동의 권리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2% 고용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 2.9%
-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미고용 1인당 월 94~157만원)
초과 고용시 고용장려금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1인당 장애 정도에 따라 30~60만원)
- 취업 시 근로지원인 지원(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주당 40시간)



+ 권리보장 과제

- 장애인구 비율 5% 수준에 맞게 의무고용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최저임금법 제7조(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폐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일할 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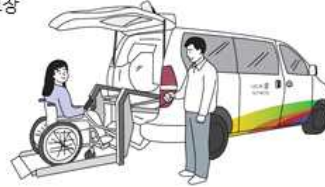
일할 권리는 경제적인 상황과도 직결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하고,
최저임금법 7조에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제외해도
된다는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사회참여 및 활동의 권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접근권 보장
- 도로의 이동성 보장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등) 이용



+ 권리보장 과제

- 장애인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사회참여 및 활동의 권리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보조기구 또는 인적지원을 통해 원활히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아무런 걸림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건물의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장애인이 편한 곳은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으면, 유모차도, 관절이 아프신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와 나라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 이용의 권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동보조기구의 사용(휠체어, 전동휠체어, 원자판이)
- 보기 보조기구(확대 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보이스아이메이트)
- 들기 보조기구(인공와우, 보청기)
- 의사소통 보조기구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 로봇과 인공지능



+ 권리보장 과제

-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보조기구 제품 보급의 확대
- 보조기구 개발과 산업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사진 제시



마지막으로 보조기기 이용의 권리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휠체어,
보는 게 불편한 장애인의 확대 독서기,
듣는 게 불편한 장애인의 보청기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기구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IT를 어떻게 보조기구에
적용하여 보급할 것인지 청사진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권이 있을 때 인권은 사라진다, 장애인의 권리가 충족되면 차별의 장애는 사라진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리의 요구자격을 명시하는 것, 권리의 실재를 향유하는 것 당사자의 자력화, 즉 역량을 갖는 것이 인권의 구성요소인데요.

권리의 요구자격 명시는 앞서 설명 드린 관련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권리의 실제 향유란 보조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삶 안에서 권리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자력화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피플퍼스트 운동처럼 힘이나 역량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데요.
장애인이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 받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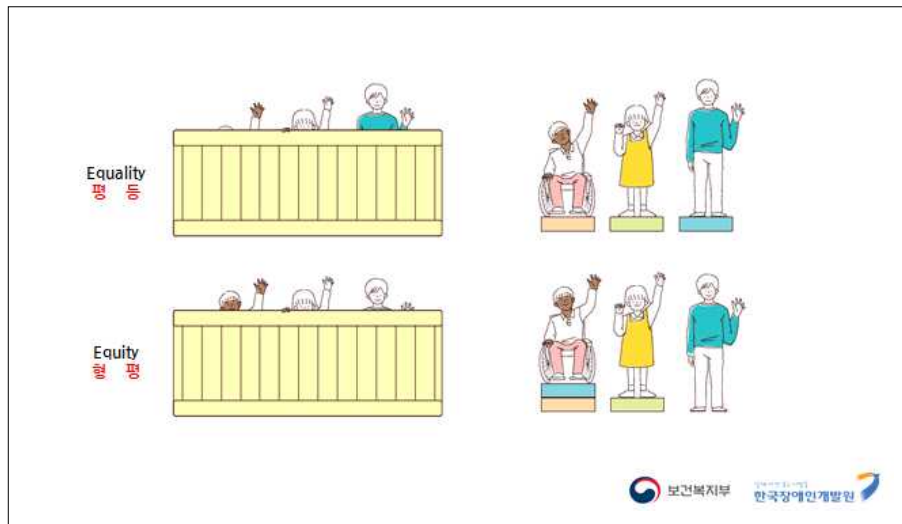
이 4가지 권리가 충족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텐데요
우리 모두는 이 4가지 중, 세상의 포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IV. 장애인 지원 방법 (편의, 에티켓)



장애의 특성과 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특성에 따라 적절한 편의지원만
있으면 때로 장애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에 따라 어떠한 보조기구, 편의시설, 편의지원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 키가 작은 어린이, 그리고 키 큰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은 이들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형평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그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두
개의 디딤판을 키가 작은 어린이에게는 한 개의 디딤판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담장 너머 세상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린 편의 지원은
이러한 형평의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편의 지원

- ☑ 보조기구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크러치, 휠체어, 스쿠터, 의족 등
- ☑ 편의시설 : 문턱 제거, 경사로, 안전바,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
- ☑ 편의지원 :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을 위한 높낮이조절책상, 물건을 들거나 출장 갈 때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손이 불편한 지체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필기 지원 등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휠체어, 크러치, 의족 등 보행을 돕는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욕창방지용 방석도 필요하죠.

시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등의 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에티켓

-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추기
- ▼ 좁은 길에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기
- ▼ 휠체어를 미는 등 무조건 도와주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기
- ▼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양보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히거나 의자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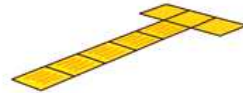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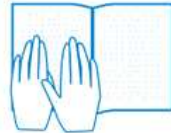
좁은 길에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는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살짝 비켜주면 좋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등 무조건 도와주기 보다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편의지원

- ☑ 보조기구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 렌즈, 돋보기, 의안, 흰지팡이 등
- ☑ 편의시설 : 점자블럭,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 ☑ 편의지원 : 안내견을 동반한 건물 출입 가능,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무실 안 물건에 부딪치지 않도록 인테리어, 정보습득을 위해 확대 독서기나 음성출력 소프트웨어 지원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을 도와주거나 점자나 소리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필요한 보조기구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점자블럭이나 점자표지판, 음성유도기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이 부딪치지 않도록 물건을 배치하는 등의 의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물 출입이 불가능한 건물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편의지원의 측면입니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에티켓

- ▼ 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내밀기
- ▼ "여기, 저기", "이쪽, 저쪽"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 의자에 앉는걸 도와줄 때는 의자 등받이에
시각장애인의 한쪽 손을 가져다 주기
-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나 안내견은
함부로 만지지 않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도울 때는 시각장애인을 잡고 끌어당기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이 내 팔을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내어 줍니다.

여기저기, 이쪽저쪽 등의 애매한 방향 설명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렵습니다. 시계방향으로 2시, 왼쪽으로 1미터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는 걸 도와줄 때는 의자 등받이에 시각장애인의 한쪽 손을 대어주고,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나 안내견은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편의지원

- ☑ 보조기구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시각신호표시기, 전동시계, 헤드폰 등
- ☑ 편의시설 : 문자안내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
- ☑ 편의지원 : 의사소통을 위해 직장내에 수어통역사 배치, 면접시험시 자필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수어통역사 대동, 전화상담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직장 내 업무 배치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시각신호표시기, 전동시계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소리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간 안에 문자 안내판이나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직장 내에 수어통역사를 비치하거나 전화상담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배치를 하는 등의 청각장애를 가진 직장인에게 편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에티켓

- ✓ 입 모양을 보고 소통을 하는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기
- ✓ 수어를 모를 때는 글을 쓰거나 손짓, 몸짓으로 대화하기
- ✓ 글로 대화를 할 때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중요한 이야기만 짧게 쓰기
- ✓ 듣지 못한다고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 언어장애인과 소통을 할 때 나의 입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천천하고 정확한 입모양으로 이야기 합니다. 수어를 모를 때는 글을 쓰거나 손짓, 몸짓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글로 대화할 때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핵심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듣지 못한다고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인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편의지원

☑ 보조기구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 편의시설 : 해당사항 없음

☑ 편의지원 : 직장 적응 및 직무 숙련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관찰/상담을 통해 근무일, 휴무일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발달장애인이 보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



인지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증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됩니다.

직장 적응 및 직무 숙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 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편의이기도 합니다.

인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_ 에티켓

- ▶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짧게,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기
- ▶ 행동이나 말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기
- ▶ 발달장애인의 말이나 행동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따라하는 등 놀리지 않기
- ▶ 성인 발달장애인을 어린 아이처럼 대하지 않기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짧게,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행동이나 말이 느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 주고,
발달장애인의 말이나 행동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따라하는
등 놀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매우
실례입니다. 생활연령 그대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 ☑ (외출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무수행능력이 낮은 경우) 적합 직무로 재배치하거나 직무지도원을 배치
- ☑ (체력이 떨어진 경우) 몸의 피로가 비장애인 보다 빨리 찾아 올 수 있어, 단시간 근무로 조정
-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 정기검진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외출, 조퇴, 병가 등 지원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합 직무로 재배치하거나
직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보다 몸의 피로가 더 빨리 찾아와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활이나 정기검진 등을 위한 병원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출퇴근 시간 조정, 외출 조퇴, 병가 등의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장하는 용어 사용하기

X

장애자, 장애우
정상인, 일반인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극복한

O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를 잘 받아들여



마지막으로
제일 기본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자, 장애우 대신 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
장애를 앓고 있는 대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를 극복한 대신 장애를 잘 받아들여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V.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지원과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를 대하는 사회적 이중성, 혼란



■ 장애에 대한 사회의 관점 변화가 필요

"장애를 다른 집단으로 구분 짓는 접근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행 능력의 장애	목발, 의족	지체장애 (원 보행능력으로 장애로 포함)	보행 방법의 다양성
듣기 능력의 장애	보청기	청각장애 (원 듣기능력으로 장애로 포함)	듣는 방법의 다양성
보기 능력의 장애	안경	시각장애 (교정 보기능력으로 장애로 포함)	보는 방법의 다양성
정신 능력의 장애	정신과 약물	정신장애 (원 정신능력으로 장애로 포함)	사고 양식의 다양성
반응 능력의 장애	대체의사소통	지폐장애 (원 반응능력으로 장애로 포함)	소통방식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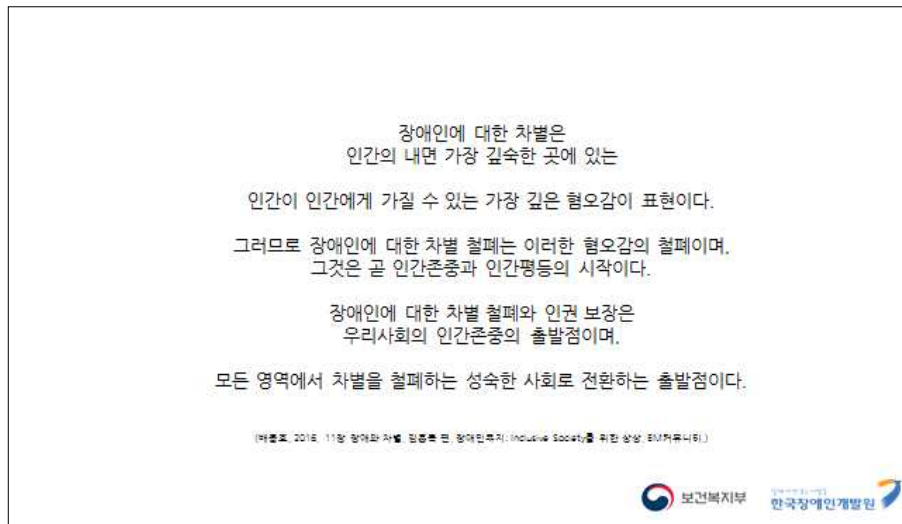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도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행능력이 장애인 사람이 목발이나 휠체어로 걷고
 듣기능력이 장애인 사람이 보청기나 수어를 통해 소통하고
 보기능력이 장애인 사람이 안경을 통해 보거나
 점자를 통해 소통하고

정신능력이 장애인 사람의 사고를 다양성으로 받아드리고,
 반응능력이 장애인 사람의 대체의사소통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우리 사회의 디딤돌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활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혐오감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는 이러한 혐오감의 철폐이며,
그것은 곧 인간존중과 인간평등의 시작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은 우리사회의 인간존중의
출발점이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성숙한 사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영상) 장애는 장벽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k6r-62a5I&t=24s>



출처: 영국 'Unlimited' 제작 애니메이션 '장벽을 제거 하는 것'
<https://weareunlimited.org.uk/social-model-disability-animation/>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국의 'unlimited' 라는 단체에서 2018년 제작한 애니메이션(“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mUk6r-62a5I&t=24s>

장애는 장벽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장벽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보나 건물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장벽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에 따른 관계적 장벽
복잡한 절차와 유연성 없는 조직의 장벽이
장애를 만듭니다.

이러한 장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성숙한 사회의 출발점에서
함께 걸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 일러스트(소소한 소통 자체 제작, 2018)
-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EM커뮤니티, 2016)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한국장애인재단, 2016)



참고문헌 목록

- 일러스트(소소한 소통 자체 제작, 2018)
-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EM커뮤니티, 2016)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한국장애인재단, 2016)